



사회보장협정 안내

Social Security Agreements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National Pension Service**

Tel 02) 2176-8700 / **Fax** 02) 3485-9804

Zip code 04554

Address 22nd Floor, Namsan square Bldg
173 Toegye-ro, Jung-gu, Seoul, Korea

Website www.nps.or.kr

사회보장협정 안내

Social Security Agreements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목차

사회보장협정이란?	P 1
사회보장협정의 유형	P 1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른 혜택	P 2
사회보장협정 관련 업무처리 방법	P 3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연락처	P 10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곳

- 홈페이지 <http://www.nps.or.kr>
- 블로그 <http://blog.naver.com/intlnps1355>
-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proNPS>
- 트위터 http://twitter.com/NPS_2010
- 노후준비서비스 <http://csa.nps.or.kr>

사회보장협정이란?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각국의 연금제도 등이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체결되며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외국인 · 국외거주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각국의 연금제도에서 연금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입기간 (노령연금의 경우 평균 10~20년)을 필요로 하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외국인 등에게 연금이나 반환일시금 미지급
- 외국인이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사회보장협정의 유형

사회보장협정에는 보험료 면제협정과 가입기간 합산협정이 있습니다. 보험료 면제협정은 협정 상대국에 일정기간 파견된 근로자(또는 자영자)의 상대국 연금보험료 면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협정이고, 가입기간 합산협정은 상대국 연금보험료 면제뿐만 아니라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입니다.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2017.7.31. 현재 / 가나다 順] [표 1]

구 분	국가 (31개국)
보험료 면제협정 (10개국)	네덜란드, 몽골, 스위스, 영국,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탈리아, 일본, 중국, 칠레
가입기간 합산협정 (21개국)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미국,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인도, 체코, 캐나다(퀘벡),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터키, 스웨덴 * 퀘벡은 2017.9.1.발효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른 혜택

1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문제 해소

- 파견근로자는 본국(고용지국)과 파견국(근로지국)에서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하지만 협정 체결국으로 파견된 근로자는 일정기간 파견국 보험료 부담이 면제됩니다.
- 파견국 보험료 면제기간은 대부분 3~5년으로 결정되며, 파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적으로 1~3년간 보험료 면제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한국 00전자에 근무중 독일로 5년간 파견된 김00님 (급여 500만원 /월)

▶ 협정 발효 전 연금보험료	연간 1,787만원 납부
- 한국 국민연금(상한액 연 5,388만원, 보험료율 9%)	연 485만원
- 독일 연금·고용보험	연 1,302만원
(연 6,000만원, 보험료율 21.7%)	

▶ 협정 발효 후 연금보험료	연간 485만원 납부
- 한·독 사회보장협정 발효('03.1.)로 독일 보험료 면제액	연 1,302만원 면제
	5년간 6,510만원 면제

2 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 혜택 확대

(사례 2) 미국 연금제도에 9년간 보험료(약 1억원)를 납부하고 귀국하여 한국 국민연금을 5년간 납부한 이00 님

▶ 협정 발효 전
(미국) 미국에 보험료만 납부하고,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었음.
(한국) 연금혜택 없이 반환일시금만 가능

- ▶ 협정 발효 후 : 한국과 미국 양국 노령연금 각각 수령 (매월 약 104만원)
- (미국) 양국 가입기간 14년으로 미국 최소가입기간(10년) 충족.
미국 연금액(9/14) - 약 84만원
- (한국) 양국 가입기간 14년으로 미국 최소가입기간(10년) 충족.
한국 연금액(5/14) - 약 20만원

3 협정 상대국 국민에 대한 동등대우 실현

- 상대국 국민에 대하여 연금액 산정과 급여지급(해외송금 포함)에 있어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하여 해외송금에 따른 연금액 삭감문제 등 해소

(사례 3) 호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10년동안 거주하다 국내로 이주한 최00 님

▶ 협정 발효 전 :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호주 노령연금 청구불가

▶ 협정 발효 후 : 호주 노령연금 청구하고 매월 약 AUD1,500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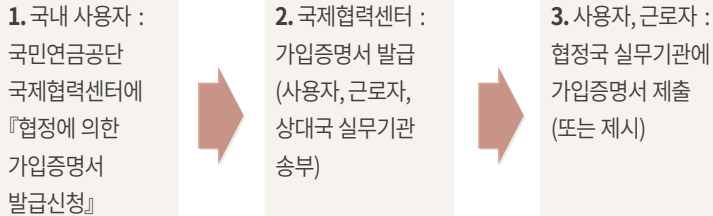
사회보장협정 관련 업무처리 방법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서는 협정국의 보험료 면제와 협정 상대국에 대한 연금 청구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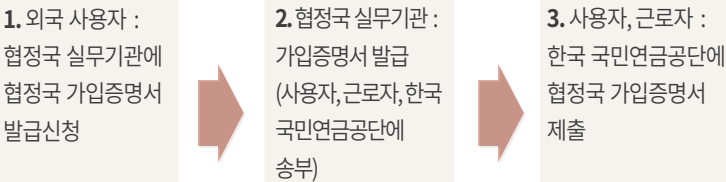
1 협정에 의한 보험료 면제절차

[흐름도 1]

■ 국민연금 가입자가 협정 상대국 연금보험료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



■ 외국연금 가입자가 한국 연금보험료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



1-1. 국가별 세부 제출서류

■ 협정 상대국 보험료 면제를 위한 가입증명서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표 2]

국가명	공통서류	추가서류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몽골, 미국,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인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퀘벡), 호주	- 신청서 - 파견 (인사)명령서	
네덜란드	상동	영문주민등본(동반가족 있는 경우)
스페인	상동	해외의료비 보장보험 가입서류 (질병, 상해, 여행자보험 등)
슬로바키아	상동	(공적)산재보험 가입서류 또는 해외파견근로자 산재승인통보서(근로복지공단) + (민간)근재보험(민간보험사)
오스트리아, 터키, 폴란드	상동	- 해외의료비 보장보험 가입서류 (질병, 상해, 여행자보험 등) + - (공적)산재보험 가입서류 또는 해외파견근로자 산재승인통보서 (근로복지공단) + (민간)근재보험(민간보험사)
스위스, 중국, 핀란드	상동	고용보험가입 확인서류(고용보험센터)
프랑스	상동	(공적)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외파견근로자 산재승인통보서 (근로복지공단)
헝가리	상동	공문 현지고용계약서 (현지고용된 경우)

※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제출이 지연될 경우, 기 납부한 상대국 **보험료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가입증명서 없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보험료, 연체금, 과태료 등이 소급부과** 될 수 있으므로 파견 한 달 전 가입증명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를 위한 가입증명서 접수시 구비서류

[표 3]

국가명	공통서류	추가서류
협정 체결 31개국	1. 상대국 가입증명서 원본 2. 면제신청 공문* 3.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등기우편 또는 내방**

* 공문 작성방법: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 ▶ 서식찾기 ▶ “공문”으로 검색
▶ 『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면제 신청 공문 예시』

** 제출처: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2층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2 협정 상대국 연금 청구 절차

■ 협정에 의한 연금 청구절차

[흐름도 2]

한국에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외국(협정 상대국) 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1. 연금 청구자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협정 상대국
연금청구

2. 국제협력센터 :
협정국 연금공단에
협정연금 청구서,
한국 가입기간 송부

3. 협정국 연금공단 :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결정 및 결과
본인에게 송부

외국에서 외국 연금기관을 통해 한국 국민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1. 연금 청구자 :
협정국 연금공단을
통해 국민연금 청구

2. 협정국 연금공단 :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협정에 의한 한국연금
청구서, 협정국
가입기간 송부

3. 국제협력센터 :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결정 및 결과
본인에게 송부

2-1. 국가별 세부 연금 수급조건

■ 외국연금 청구요건

- ① 가입기간 합산협정 체결국([표 1] 참조)에서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 납부
* [표 4]의 협정국 연금보험료 최소 납부기간
- ② 국민연금과 상대국 합산 가입기간이 국가별 노령연금 수급요건의 납부기간 이상
- ③ 상대국 수급개시연령에 도달



2-2. 사회보장협정국 노령연금 수급조건

[2017.7.31. 현재 / 가나다 順]

[표 4]

연번	국가명	수급(조기)연령	수급요건	협정국 연금보험료 최소 납부기간
1	덴마크	공적노령연금: 65세 ATP: 65세	공적노령연금: 3년이상 거주 (최소 1년이상 근로) ATP: 1회 납부	1년
2	독일	65세 6개월	5년	
3	루마니아	남: 65세, 여: 60세 3개월	15년	
4	미국	66(62)세	10년	1년 6개월
5	벨기에	65(60)세	1회 이상	
6	불가리아	66세	15년	
7	브라질	남: 65세, 여: 60세	15년	
8	스웨덴	소득연계연금: 61세 보장연금: 65세	소득연계연금: 1회이상 보장연금: 3년이상 거주	
9	스페인	65세 4개월(61세 4개월)	15년 (50세 이후 최소 2년 필요)	1년
10	슬로바키아	62세 76일	15년	1년

연번	국가명	수급(조기)연령	수급요건	협정국 연금보험료 최소 납부기간
11	아일랜드	66세	520주	1년
12	오스트리아	65(62)세	15년(35~37.5년)	1년
13	인도	58세	10년	
14	체코	남: 63세 2개월, 여: 62세 4개월	33년	
15	캐나다	65(60)세	CPP: 1회이상 OAS: 해외거주 청구시 20년 (캐나다 거주 청구시 10년)	1년
	퀘벡	65(60)세	QPP: 1회이상	1년
16	터키	남: 60세, 여: 58세	7,200일 이상 납부	1년
17	폴란드	신제도 남: 66세 4개월, 여: 61세 2개월 구제도 (남: 65세, 여: 60세)	신제도- 최소기간요건 없음 구제도- 남: 25년, 여: 20년	1년
18	프랑스	65세 9개월(60세 9개월)	1회 이상	
19	핀란드	68세(63세)	1회 이상	
20	헝가리	63세 5개월	15/20년	1년
21	호주	65세 6개월	10년 영구거주 (이중 최소 5년 이상 연속)	1년 (최소 6개월 연속)

※ 협정국의 연금지급에 관한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조건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3. 사회보장협정국 관련 웹사이트

[2017.7.31. 현재 / 발효일 順]

[표 5]

연번	국가명	발효일	협정형태	상대국 실무 기관 웹사이트
1	이란	1978. 6. 10.	보험료면제	사회보장청 (www.tamin.ir)
2	캐나다	1999. 5. 1.	보험료면제 + 기간합산	국세청 (www.cra-arc.gc.ca) 고용사회개발부 (www.esdc.gc.ca)
	퀘벡	2017. 9. 1.	보험료면제 +기간합산	퀘벡연금공단 (www.retraitequebec.gouv.qc.ca)
3	영국	2000. 8. 1.	보험료면제	국세관세청 (www.hmrc.gov.uk)
4	미국	2001. 4. 1.	보험료면제 + 기간합산	사회보장청 (www.ssa.gov)
5	독일	2003. 1. 1.	보험료면제 + 기간합산	연방보험공단 (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
6	네덜란드	2003. 10. 1.	보험료면제	사회보험은행 (www.svb.nl)
7	일본	2005. 4. 1.	보험료면제	일본연금기구 (www.nenkin.go.jp)
8	이탈리아	2005. 4. 1.	보험료면제	국가사회보장청 (www.inps.it)
9	우즈베키스탄	2006. 5. 1.	보험료면제	예산외연금기금 (www.pfru.uz) 재무부 (www.mf.uz)
10	몽골	2007. 3. 1.	보험료면제	국가사회보험청 (www.ndaatgal.mn)
11	헝가리	2007. 3. 1.	보험료면제 + 기간합산	국민연금보험중앙관리청 (www.onyf.hu)
12	프랑스	2007. 6. 1.	보험료면제 + 기간합산	사회보장 유럽 및 국제 연락사무소 (www.cleiss.fr)
13	호주	2008. 10. 1.	보험료면제 + 기간합산	센터링크 (www.humanservices.gov.au)
14	체코	2008. 11. 1.	보험료면제 + 기간합산	체코사회보장청 (www.cssz.cz)

연번	국가명	발효일	협정형태	상대국 실무 기관 웹사이트
15	아일랜드	2009.1.1.	보험료면제 + 기간합산	사회보장부 (www.welfare.ie)
16	벨기에	2009.7.1.	보험료면제 + 기간합산	국가연금청 (www.rvponp.fgov.be) 국가자영자사회보험청 (www.rsvz-inasti.fgov.be) 국가질병장애평험청 (INAMI) (www.riziv.fgov.be)
17	폴란드	2010.3.1.	보험료면제 + 기간합산	사회보험기관 (www.zus.pl) 농민사회보험기관 (www.krus.gov.pl)
18	슬로바키아	2010.3.1.	보험료면제 + 기간합산	사회보험청 (www.socpoist.sk)
19	불가리아	2010.3.1.	보험료면제 + 기간합산	국가사회보장기관 (www.nssi.bg)
20	루마니아	2010.7.1.	보험료면제 + 기간합산	국가연금 및 사회보험원 (www.cnpp.ro)
21	오스트리아	2010.10.1.	보험료면제 + 기간합산	연금보험공단 (www.pensionsversicherung.at)
22	덴마크	2011.9.1.	보험료면제 + 기간합산	연금지급청 (www.atp.dk)
23	인도	2011.11.1.	보험료면제 + 기간합산	근로자적립기금기관 (EPFO)(www.epfindia.com)
24	중국	2013.1.16.	보험료면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www.mohrss.gov.cn)
25	스페인	2013.4.1.	보험료면제 + 기간합산	국가사회보장기관 (www.seg-social.es) 사회보장일반기금 (www.seg-social.es)
26	터키	2015.6.1.	보험료면제 + 기간합산	사회보장기구 (www.sgk.gov.tr)
27	스웨덴	2015.6.1.	보험료면제 + 기간합산	연금청 (www.pensionsmyndigheten.se) 사회보험청 (www.forsakringskassan.se)
28	스위스	2015.6.1.	보험료면제	보상기금 (www.zas.admin.ch)
29	브라질	2015.11.1.	보험료면제 + 기간합산	국가사회보장청 (www.inss.gov.br)

연번	국가명	발효일	협정형태	상대국 실무 기관 웹사이트
30	칠레	2017.2.1.	보험료면제	연금감독청 (www.safp.cl)
31	핀란드	2017.2.1.	보험료면제 + 기간합산	핀란드연금센터 (www.etk.fi, www.tyoelake.fi)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연락처

- 주소 : (우)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2층
- 전화 : 02)2176-8700
- 팩스 : 02)3485-9804, 02)3485-9807(중국 관련 신청 전용번호)
- 블로그 : 『알면 약이 되는 사회보장협정』
바로가기 ▶ <http://blog.naver.com/intlnps1355>
또는 주요 포털 검색창에 “알사보”, “사회보장협정”으로 검색



MEMO

청렴한 국민연금!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